

의안번호	2200238
의 퇴 인	이병진의원
회 답 일	2024. 6. 5.
추계번호	24B0487
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,500만원, 2026년 7,5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억 3,700만원(연평균 2,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제1항)	—	60	—	—	—	60	12
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(안 제5조의2 신설)	15	15	15	15	15	77	15
추가재정소요	15	75	15	15	15	137	27

주: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5조제1항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<u>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</u> 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함)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(안 제5조의2 신설)	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<u>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둠(제1항)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20명 이내의 위원</u> 으로 구성함(제3항)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<u>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</u> (제4항) 1. 차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. 차산업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 3. 학계 및 차산업 관련 업계의 전문가 4. 그 밖에 차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5조제1항)	○	• 「중장기 차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」 연구용역 예산 참고
2	차산업발전심의 위원회(안 제5조 의2 신설)	○	• 유사사례 참고 (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례 참고)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제1항)

- 개정안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2025년에 법이 시행되고 2026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 -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은 2023년 「중장기 차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」¹⁾ 연구용역 공고예산을 참고하여 6,000만원으로 가정

1) 과제명: 중장기 차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
연구기관: 한국농촌경제연구원/ 연구기간: 2023.7.27.~2024.3.15.
용역예산: 6,000만원/ 공고일: 2023.6.16.(재공고일)
(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조달청 나라장터 참고)

- 추계결과, 「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경우,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6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비용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	—	60	—	—	—	60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(안 제5조의2 신설)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- 민간위원(차산업종사자 대표, 학계 및 전문가 등) 수는 최근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 위원회²⁾ 구성 현황을 참고하여 17명($\approx 20\text{명} \times 84.4\%$)으로 가정
 -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 위원회의 정원 대비 민간위원 평균 비율은 84.4%
 - 회의개최 횟수는 최근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 위원회 개최현황을 참고하여 연간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 위원회의 연평균 회의개최횟수는 2.9회

[표 3]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 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사례

(단위: 명, 회)

위원회 명	위원회 구성				연간 회의(본회의 기준) 개최횟수			
	정원 (A=B+C)	공무원 (B)	민간위원 (C)	정원대비 민간위원 비율(C/A)	2021	2022	2023	연평균
농림종자위원회	15	4	11	73.3%	4	4	4	4
식품산업진흥심의회	30	5	25	83.3%	2	4	2	3
중앙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	19	1	18	94.7%	2	2	2	2
평균	21.3	3.3	18.0	84.4%	2.7	3.3	2.7	2.9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,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」, 2024.4.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작성

2) 유사 위원회: 농림종자위원회, 식품산업진흥심의회, 중앙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

- 회의참석 사례금(안전 검토비 등 포함)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³⁾
 - 이때,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□ 추계결과,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7,7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비용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명, 회, 만원/명·회,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민간위원 수(A)	17	17	17	17	17	—
회의개최 횟수(B)	3	3	3	3	3	—
사례금 단가(C)	30	30	30	30	30	—
추가재정소요 (D=A×B×C)	15	15	15	15	15	77

주: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3)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,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내로 편성(기획재정부,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, 2024. 5., 218쪽)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이유미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